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35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임호선 · 박선원 · 윤준병
정준호 · 어기구 · 김영환
강선우 · 이재정 · 박정현
문대림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 ----- ----- ----- ----- 제5호----- ----- ----- ----- 제6호-----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의2. 4. (생략)	5. 6. (현행 제3호의2 및 제4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